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 ~ 5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2. 12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읍면동 기능전환,실업대책,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한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변경코자 함

주요골자

- 한시정원 한시기한 연장(당초 : '2002.12.31)
- 한시정원(읍면 기능전환1명, 정보화3명, 실업대책 추진1명) 5명 중
 - 실업대책 추진인력 1명(6급1명)은 2003년12월31일 까지로 하고 2004년 1월1일 부터는 상시정원(9급)으로 환원
 - 읍면기능전환 한시정원 1명(5급1명)은 2004년6월30일 까지로 연장하고, 2004년7월1일부터 부터 상시정원(9급)으로 환원
 - 정보화 인력 3명(6급1명,7급1명,9급1명)은 2004년6월30일 까지로 한시 기한을 연장

개정근거

-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·정원 연장 승인
(경상남도 행정13101-12463(2002.12.04))
-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 관련 지침 통보
(경상남도 행정12200-12497(2002.12.10))
- 시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
(경상남도 행정 12200-12519(2002.12.12)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591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5조중 “5명은 2002년12월31일
까지로 하고,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 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”를 “1명
은 2003년12월31일 까지로 하고, 2004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 4
명은 2004년6월30일 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
환원하며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부칙(제1591호)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 (현행과 같음) 제5조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 6명중 5명은 2002년12월31일 까지로 하고,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 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p>	<p>부칙(제1591호)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 (현행과 같음) 제5조(한시정원) 1명은 2003년12월31일 까지로 하고, 2004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 4명은 2004년6월30일 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..... </p>